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118
----------	------

2023. 09. 11.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14. 신동원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3. 8. 21.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9. 11.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신동원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하려는 지역이 많고,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이 많으므로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
- 그로 인해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통해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추진의 공익성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6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비사업정책자문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3년 8월 14일 신동원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안 제86조의2) 개요	
목적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합리적인 정책추진 도모
자문 사항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결정 사항 3.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수: 15명 이상 25명 이내 ※ 회의는 자문사항별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주택정책실장 / 부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 위원: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개정안에 따른 정비사업정책자문위는 서울시 정비사업 분야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¹⁾로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각종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므로²⁾,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설치요건³⁾ 및 절차⁴⁾ 등이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정비사업정책자문위는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익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각종위원회 조

-
- 1)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그 의사는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 그 의사를 채택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됨.
 - 2) **각종위원회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3) **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전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각종위원회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례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각종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는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분야의 경우 중요 건축정책의 심의, 자치구 또는 관련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5)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내에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두고 있으며, ▲주택정책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6)에 따라 주택정책자문단을, ▲도시계획분야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
- 5)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6)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
 -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례」 7)에 따라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중에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소관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주요 사무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법령·조례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중요정책의 입안·결정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들어 급변하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비사업장에서의 공사비 갈등해결, 재개발 공모 후보지 선정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에 따른 맞춤형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마련 등 정비사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함에 있어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10. 4.]

정비사업 관련 주요 사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주요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민간·공공 정비사업 구역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 투기방지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권리산정기준, 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 등)
-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지원 관련 규정 및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 회계규정, 행정업무 규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시공자 선정기준 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및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일몰제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출처: 주택정책실(주거정비과) 내부자료 정리

- 다만, 기존에 설치된 자문단과의 성격·기능의 중복 또는 차별성을 살펴볼 때,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주택정책실(주거정비과)이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현재 주택정책실(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정책자문단’ 및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일부 중복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비사업정책과 관련된 자문결과가 주택·건축정책이나 도시계획정책 자문결과와 상이한 경우 정책결정 및 집행상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문단의 성격과 기능이 상호중복되지 않도록 자문단간 역할 정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

< 유사분야 서울시 자문단 현황 >

	건축정책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택정책자문단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정비사업정책 자문위원회(안)
자문단 구성여부	미구성	(해당없음)	미구성	구성	-
근거	건축기본법 제18조	주거기본법 제9조	-	-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9조, 제23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 제9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9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제86조의2
시행일	2010.7.15.	2012.12.31.	2023.3.27. (~2025.3.26.한시)	2013.10.4.	-
위원수	~30명	~15명	20명~25명	25명~30명 (3분의1이상은 도시계획위원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	15명~25명
위원장	위원 중 임명 또는 위촉 (*총괄건축가)	시장	행정2부시장	외부 전문가 중 호선 (*총괄건축가)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외부 전문가 중 호선	외부 전문가 중 호선	주택공급기획관
자문위원 분야	시의원, 건축, 도시, 문화 등 전문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대상계층 대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전문가	-	도시계획(도시경관, 도시설계, 교통 등), 인문사회(문화, 미래, 역사, 관광 등), 시의원	시의원, 교수, 변호사·건축사·도시 계획기술사 등 전문가, 공무원 등
시의원 위원	위촉 (2명)	위촉 (3명)	-	위촉 (3명)	위촉
소관부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사업기획과)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출처: 전문위원실 정리(2023.8.31.기준)

- 한편, 최근('23년 3월) 조례 개정⁸⁾을 통해 주택정책 분야 자문기구로서 근거가 마련된 '주택정책자문단'은 '23년 9월 현재까지 위원 미구성 등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택정책실은 향후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정비사업정책자문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임.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기에 앞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조례에 근거하여

8) 조례 제867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시행일: 2023.3.27.)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특수성, 이해 및 갈등구조의 복잡성, 고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유사분야 자문단(주택정책자문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등)이 소관부서별(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로 설치·운영중인 가운데 부서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자문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는 각각의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둔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되 건축, 도시계획, 주택, 정비사업 등 도시정책분야의 상호 연관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위원 구성수를 “30명 이내”로 수정하고(안 제86조의2제3항), 매 회의마다 소집해야하는 위원의 상한 및 하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6조의2제6항).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18
----------	------------

제안일자 : 2023. 09. 11.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위원 구성수를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매 회의마다 소집해야하는 위원의 상한 및 하한 규정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명 이상 25명”을 “30명”으로 하고,
- 제86조의2제6항 중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자문위원회”로,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명 이상 2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
은 조 제6항 중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자문위원회”로, “매 회의마다 지정하
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결정 사항
3.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되며, 위

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⑧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준용한다.
-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
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6조의2(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 계 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 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 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 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이 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u>2.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결 정 사항</u> <u>3.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u> <u>4. 그 밖에 시민의 권리·의무 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위원장이 자문위원회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u> <p><u>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u></p>

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4.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
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
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
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⑧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